

## 『2025 입주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 공고문

(재)안양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안양시 대표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2024 입주기업바우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재)안양산업진흥원장인



### I 사업개요

1. 공고기간 : 2025. 3. 24. ~ 04. 25(금)
2. 접수기간 : 2025. 4. 21(월) ~ 04. 25.(금) 18시
3. 지원대상 : 아래 입주기업으로서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사실이 없는 기업**
  - 진흥원 본원 입주기업 2 ~ 12층
  - 창업지원센터 2 ~ 9층 입주기업 (**※ 가상오피스 입주사 제외**)
  - 동안벤처센터 4, 5, 6층 입주기업
4. 지원내용
  - (공간 임대료) 진흥원 입주공간 임대료 지원 (年 임대료 80% 내)
  - (공간 관리비) 진흥원 입주공간 관리비 지원 (年 관리비 80% 내)
  - (시제품 제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시제품 제작 지원
  - (온오프 마케팅) 신문, 잡지, 유튜브 등 마케팅 지원
5.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20개사)

## II 신청자격

### 1. 신청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아래 해당 기업

구분	세부 내용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흥원 본원 입주기업 2~12층</li> <li>· 창업지원센터 2 ~ 9층 (※ 가상오피스 입주사 제외)</li> <li>· 동안벤처센터 4, 5, 6층</li> </ul>
매출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최근 3년 평균 200억 초과 기업은 신청 불가</li> <li>· 상장사, 중견기업은 신청 불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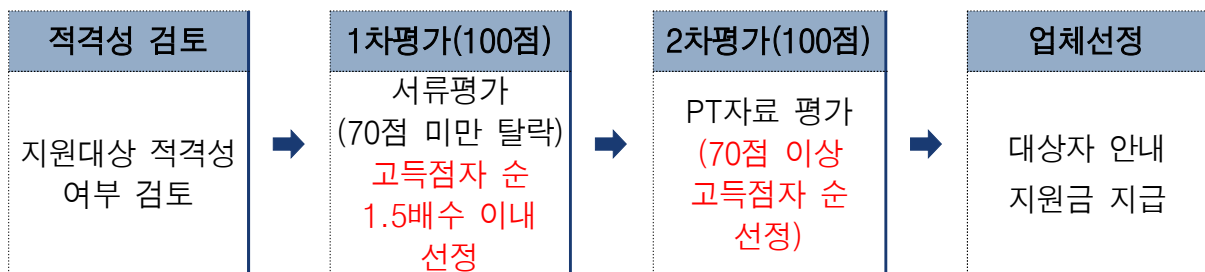
#### 나. 제외 대상

- 국제·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추가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신청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기업)
- 기타 법령에 제한사유 발생 및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기업)

## III 선정절차 및 방법

### 1.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 평가

### 2. 평가일정(안)



※ 1차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평가 별도 안내 예정

### 3. 위원구성 :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 4. 평가기준 :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

구분	방법	기준	총점
1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 검토 등</li> <li>-계획서, 사업비 운용계획서, 협약서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현황(30) / 재무현황, 기반역량 등</li> <li>기술성 및 사업성(70)</li> <li>- 보유기술, 시장분, 목표 및 내용, 매출증가 및 실용화 가능성 등</li> </ul>	100
2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 후 성장여부(매출, 고용 등)</li> <li>향후 기대효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계획의 적정성(30)</li> <li>사업성 및 시장성(30)</li> <li>개발 제품의 우수성(20)</li> <li>사업 기대효과(20)</li> </ul>	100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양시 우수기업 인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항목당 5점)</li> <li>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인증서, 여성기업확인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항목당 2점)</li> <li>신규고용 창출확인서(안양시민 고용시, 1인당 1점, 최대 4점부여)</li> <li>※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li> </ul>		10

## IV 주의사항

### 1. 집행방법

- 가. [진흥원] → [선정기업] 계좌이체
- 나. 지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은 별도로 체결 및 안내
- 다. 별도의 입주기업 바우처 자금 관리 계좌(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 라.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인정되며 부가세는 지원기업이 부담

### 2. 주의 및 유의사항

- 명시된 증빙서류외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 必
- 미 제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 가능
- 외부 회계 감사 후 부당사용 금액 발생 시 해당 금액 환수
- 전용통장 입출금 내역과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는 편철
- 기타 확인 불가능한 외국 업체 및 개인 등을 통한 지출증빙은 불인정
- 모든 증빙은 사업기간 內 진행된 지출증빙 서류 등만을 인정

### 3. 인정범위

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용된 금액 ~ 11월 7일까지 사용예정 금액

나.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항목 지원 불가

다. 협약기간 동안 진흥원과 사전 협의 된 계약내용만 인정(임의변경 불가)

라. 사업추진관련 선정기업의 재료, 장비, 기술 등에 대한 내부비용 계상 불가

마.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운용계획서 검토 후 최종 사업비 산정 및 지급

※ 기타사항은 「항목별 지원금액 및 유의사항」 참조

### 4. 관리방법

가. 별도의 사업비 관리 계좌 및 카드로 타 사업의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

나.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 외에는 불가

다.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 간 거래 불가(사업비 계좌에서 현금인출 불가)

라. 부가가치세(지원금의 10%)는 전용계좌로 미리 입금하여 집행금액에 포함

마. 전용통장 입출금내역과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는 일치되게 편철 관리

### 5. 정산방법

가.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

나. 사업지원금 사용기한(2025.11.7)까지 자금을 집행하고, 7일 이내(2025.11.14.)  
에 사업지원금 정산결과를 진흥원에 보고

다. 정산자료는 진흥원의 검토결과 또는 회계감사(자금정산 회계법인 위탁)  
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비 반납

## V 신청 관련 문의

1. 제출방법 : 담당자 E-mail 제출

주 소 : [ajm@aba.or.kr](mailto:ajm@aba.or.kr)

※ 제출시 관련서류 순번대로 압축 必(붙임1, 붙임2, 붙임3) 등 순서

나 담당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2층 기업육성부 인재민 대리  
(031-8045-6725)

## I 지원내용

구 분	지원분야
임대료/관리비	· 진흥원 입주시설 년 임대료, 관리비 80% 지원 (자부담 20%)
시제품	· 시제품(H/W, S/W) 개발 비용
홍보물 제작	· 인쇄 홍보·판촉물, 홈페이지, 동영상 카탈로그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 신문, 잡지, 유튜브 등 매체 광고, 중계플랫폼, 오픈마켓 등 광고
기 타 불인정	· 인건비, 교통비(출장비), 공공요금, 토지매입비, 시설 및 부대비

1.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별도 부가세 10% 기업부담)

※ 위에 명시된 항목외의 경우, 허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음

○ 명시된 증빙서류 외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 必

- 미 제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 가능

○ 외부회계 감사 후 부당사용 금액 발생 시 해당 금액 환수

○ 전용통장 입출금 내역과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는 편철

○ 기타 확인 불가능한 외국 업체 및 개인 등을 통한 지출증빙은 불인정

- 모든 증빙은 사업기간 內 진행된 지출증빙 서류 등만을 인정
- 수기 영수증, 거래내역서 불인정
- 사업자가 없는 개인 간(프리랜서) 거래 금지
- 외화 송금 불인정